##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26

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조지연·엄태영·강승규

구자근 · 장동혁 · 박상웅

이인선 · 김장겸 · 김형동

박덕흠 • 고동진 • 최수진

김도읍 · 최은석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을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, 긴급지원의 기준·종류·방법 및 절차 등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지원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여야 하고,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하고 있어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 이와관련하여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, 전세사기피해자에

대한 긴급지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등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지원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등의 지원이 있는데,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으로 이주 할 때 필요한 이사비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등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 노후주택의 시설보수에 따른 비용 등 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긴급지원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 또는 재산 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 및지방자치단체가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외에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을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 긴급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"로, "기준·기간·종류"를 "기간"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 기준은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 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9조의 긴급지원 외에 이사비·시설보수비 등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	제28조(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
한 특례) ① (생 략)	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
	수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소
	<u>득 또는 재산 등 기준은 「긴</u>
	급복지지원법」 제13조제1항에
	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
	별도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
	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준에
	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
	협의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	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「긴
	급복지지원법」 제9조의 긴급
	지원 외에 이사비・시설보수비
	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
	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
	있다.
② <u>제1항에</u> 따른 지원의 <u>기준</u>	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
<u>•기간 • 종류</u> • 방법 및 절차	사항 외에 제1항에
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긴급복	<u>기간</u>
지지원법」에 따른다.	
	,